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61914(본소) 공사대금반환 청구의 소
2019나64593(반소) 물건인도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빈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14229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76,98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지급하

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의 가.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76,9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176,98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톱밥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년 7월경 화순군에서 공모한 '2016년 E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화순군은 원고를 대행하여 톱밥제조시스템의 구매·설치를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위 절차에서 2016. 8. 2.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8. 17. 피고와 사이에 톱밥제조기, 톱밥이송라인, 톱밥선별라인, 톱밥분쇄라인 설비의 제작, 설치를 대금 176,9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의 70%인 123,890,900원은 국비, 지방비 부담, 원고가 자부담하는 30% 중 15%인 26,548,050원은 계약금으로, 나머지 15%인 26,548,050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가동 완료 후 14일 이내 준공금으로 지급), 설치기간 2016. 8. 17.부터 2016. 9. 16.까지, 지체상금 계약금의 1,000분의 5(1일), 계약특수조건으로 시간당 10톤 이상(알톱밥사이즈 3~5mm)의 생산량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에 따른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제작 및 납품하지 아니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제작납품을 독촉하는 한편 지체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말경 피고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원고에게 인도, 설치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18.부터 2017. 3.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에 따른 대금 176,987,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인도, 납품한 뒤에도 이 사건 설비의 오작동 및 부품파손 등으로 정상적인 시운전이 불가능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설비의 성능검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7. 3.경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설비의 보수 내지 시방서상 설계에 적합한 생산능력, 품질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8. 4. 2.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의 법적 성질

1) 관련 법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은 원고가 영위하는 톱밥 제조 및 판매업을 위하여 기술규격서 및 시방서에 맞추어 3~5mm의 알톱밥을 시간당 10톤 이상 생산하는 기능을 가지는 톱밥제조기, 톱밥이송라인, 톱밥선별라인, 톱밥분쇄라인 설비 일체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한 것으로서 위 설비는 부대체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부대체물의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의 성질은 도급이라고 할 것이다.

나. 하자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15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하자감정 및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에서는 기술규격서 및 시방서에 맞추어 설비를 제작하도록 하고, 특수계약조건으로 3~5mm 사이즈의 알톱밥을 시간당 10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1심 감정인의 이 사건 설비에 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제작, 납품한 이 사건 설비는 파쇄드럼의 규격미달 또는 엔진 및 유압부속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시운전 내지 정상작동이 불가능하였고, 위 특수계약조건에서 정하는 3~5mm 사이즈의 알 톱밥을 시간당 10톤 이상 생산할 수도 없는 상태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설비가 위와 같이 납품된 이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설비의 보수 내지 시방서상 설계에 적합한 생산능력, 품질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피고는 자신의 하도급업체인 D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설비가 정상 작동되도록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못한 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게 된 점, ③ 화순군에서는 2016년 E사업의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2017. 3. 21. 원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설비가 납품된 것을 확인하고서 준공검사조서, 사업완료조서를 작성하였고, 보조금도 모두 집행하였으나, 당시 화순군의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설비가 납품되기는 하였지만 설비라인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시운전이 불가능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작하여 납품한 이 사건 설비에는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에 따라 갖추어야 할 톱밥제조의 성능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가 있고,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의 해제 여부

1) 살피건대, 민법 제668조에 의하면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설비에는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에 따라 갖추어야 할 톱밥제조의 성능을 구비하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고, 원고가 2018. 4. 2. 피고에게 위와 같

은 이유로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은 원고의 위 해제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제는 이 사건 설비 납품 후 시운전 및 성능 검사를 완료한 2017. 3. 24.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수급인이 기계를 제작하여 도급인의 공장 내에 설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시운전을 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때에 공사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670조 제1항이 규정한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은 기계를 도급인의 공장에 설치한 날이 아니라 그 시운전까지 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날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 60649(반소)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에서는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준공검사 및 시험가동 완료 후에 준공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가 2017. 2.말경 이 사건 설비를 원고의 사업장에 반입,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설비는 정해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시운전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8. 4. 2.경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해제 당시까지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에서 정한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에 관한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제

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2017. 4. 27. 원고, 피고 및 D와 사이에 이 사건 설비 납품이 지체됨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피고가 기지급받은 대금 중 61,946,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함으로써 피고의 납품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의 하도급업체로서 이 사건 설비를 실제로 납품한 D가 하자보수를 책임지기로 함으로써 피고는 위 설비의 하자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및 D는 2017. 4. 27. 이 사건 설비가 당초 납품기일인 2016. 9. 16.보다 189일 늦게 납품되어 계약상 지연배상금률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167,252,000원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그 하도급업체인 D에게 지급해야할 도급잔액 61,946,000원을 원고에게 지연배상금으로 입금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설비의 구매 및 설치를 납품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D는 원고가 품목변경 요청한 부분을 재설치하고서 추가비용을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합의일 현재 원고 공장 내에 납품된 이 사건 설비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합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D가 20일 이내 시운전을 시행하지 않을 시 지연배상금 167,252,000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8,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을 189일 가량 넘겨 이 사건 설비가 납품된 데에 따른 지연배상금 167,252,000원에 관하여 금액을 61,946,000원으로 합의하여 피고로 하여금 나머지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면하도록 하고, 피고의 하도

급업체로서 이 사건 설비를 실제 납품한 D가 변경요청된 품목의 설치 및 향후 시운전을 실시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위 합의는 이 사건 설비가 지연되어 납품된 이후에도 시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가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은 2017. 3. 24.을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을 특정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계산한 뒤 그 액수의 감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이 사건 설비를 실제 제작, 납품한 D가 위 설비의 시운전을 합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설비의 하자에 관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종국적으로 면하도록 정한 바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왔고, 피고도 이 사건 설비가 설치된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서 대책을 강구하여 보기도 하였으나 D가 폐업하는 등의 사정으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9호증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에 따른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이후에 원고가 D로 하여금 임의로 설계변경 및 수리를 하게 하여 이 사건 설비의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납품한 때로부터 시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하자가 원고의 임의적인 설계변경 내지 수리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수령일부터 발생하는 법정이자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2016. 8. 18.부터 2017. 3.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에 따른 대금 176,987,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76,987,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설비를 인도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원상회복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이 사건 설비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기지급 대금 및 법정이자의 반환의무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설비 인도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설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기지급대금 176,987,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금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기지급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소장 부분 송

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대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설비 인도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지급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세라

 판사 김혜진

 판사 김종근

[별지]

목 록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정, 2016년 사업)

순번	품명	수량	비고
1	뜸밥제조기	1	
2	뜸밥이송라인	1	
3	뜸밥선별라인	1	
4	뜸밥분쇄라인	1	